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제768호 2022. 3. 3.(목)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821호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822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사천시 조례 제1823호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824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825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8
- 사천시 조례 제1826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사천시 조례 제1827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40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90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43
- 사천시 규칙 제791호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 44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295호 엘크루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부 중로3-9, 3-4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51

|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조례 제182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 3·6호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용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용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용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용자금의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인과 해당 용자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한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2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중복 용자의 제한) 용자금을 대부분은 자는 해당 용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다시 용자금을 대부분을 수 없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수혜자가 다음 각호”를 “용자금을 대부분은 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용자수혜자”를 “용자금을 대부분은 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금의 용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을 “용자금을 대부분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자수혜자”를 “용자금을 대부분은 자”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용자수혜자”를 “용자금을 대부분은 자의”로, “매분기”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로,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성명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성명(기업명)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3.3.>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용자 우선순위 배점표(제5조제2항 관련)

| 내 용               | 배점<br>(100) | 배점내역           |                |                | 비고                    |
|-------------------|-------------|----------------|----------------|----------------|-----------------------|
|                   |             | 상              | 중              | 하              |                       |
| 지 역 내<br>장기거주     | 20          | (10년 이상)<br>20 | (9-5년)<br>15   | (4년이하)<br>10   |                       |
| 사업성공을 및<br>사업추진의욕 | 20          | 20             | 15             | 10             |                       |
| 사업참여<br>인 원       | 30          | (3인 이상)<br>30  | (2인)<br>20     | (1인)<br>10     | -20세 이상<br>-학생·직장인 제외 |
| 자기자본<br>투 자 율     | 30          | (5% 이상)<br>30  | (30% 이상)<br>20 | (30% 미만)<br>10 | -신규 투자비 기준            |

|  |      |       |      |  |         |  |  |
|--|------|-------|------|--|---------|--|--|
| 발급번호 제 호<br><b>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b><br><b>용자 사후관리카드</b>                                  |      |       |      |  |         |  |  |
| 채 무 자  | 성 명  | (남/여) |      |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  |
| 사 업 내 용  | 사업명  |       |      |  |         |  |  |
|  | 사업개요 |       |      |  |         |  |  |
| 용 자 내 용  | 용자금액 | 금 원   |      |  | 용 자 일   |  |  |
|  | 용자기간 | 년거치   | 년 상환 |  | 상환방법    |  |  |
| 원 리 금 상 환<br>및 운 영 실 태<br>(여 백 부족시<br>이 면 기 재)   | 조사일자 |       |      |  |         |  |  |
|  | 상환실적 |       |      |  |         |  |  |
|  | 사업실태 |       |      |  |         |  |  |
|  | 조사일자 |       |      |  |         |  |  |
|  | 상환실적 |       |      |  |         |  |  |
|  | 사업실태 |       |      |  |         |  |  |
| 비 고  |      |       |      |  |         |  |  |
|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br>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br>*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70g/m<sup>2</sup>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조례 제182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2.3.3.>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 읍면동명칭 | 리동명칭   | 관 할 구 역 |
|-------|--------|---------|
| 사 천 읍 | 선 인 리  | 선인리 일원  |
|       | 정 의 리  | 정의리 일원  |
|       | 평 화 리  | 평화리 일원  |
|       | 수 석 리  | 수석리 일원  |
|       | 사 주 리  | 사주리 일원  |
|       | 용 당 리  | 용당리 일원  |
|       | 중 선 리  | 중선리 일원  |
|       | 구 암 리  | 구암리 일원  |
|       | 장 전 리  | 장전리 일원  |
|       | 금 곡 리  | 금곡리 일원  |
|       | 두 량 리  | 두량리 일원  |
| 정 동 면 | 고 읍 리  | 고읍리 일원  |
|       | 예 수 리  | 예수리 일원  |
|       | 화 암 리  | 화암리 일원  |
|       | 풍 정 리  | 풍정리 일원  |
|       | 수 청 리  | 수청리 일원  |
|       | 대 곡 리  | 대곡리 일원  |
|       | 장 산 리  | 장산리 일원  |
|       | 감 곡 리  | 감곡리 일원  |
|       | 학 춘 리  | 학춘리 일원  |
|       | 소 곡 리  | 소곡리 일원  |
| 사 남 면 | 죽 천 리  | 죽천리 일원  |
|       | 초 전 리  | 초전리 일원  |
|       | 방 지 리  | 방지리 일원  |
|       | 유 천 리  | 유천리 일원  |
|       | 월 성 리  | 월성리 일원  |
|       | 화 전 리  | 화전리 일원  |
|       | 우 천 리  | 우천리 일원  |
|       | 가 천 리  | 가천리 일원  |
|       | 중 천 리  | 중천리 일원  |
| 사 촌 리 | 사촌리 일원 |         |



| 읍면동명칭 | 리동명칭    | 관 할 구 역 |
|-------|---------|---------|
|       | 계 양 리   | 계양리 일원  |
| 용 현 면 | 선 진 리   | 선진리 일원  |
|       | 통 양 리   | 통양리 일원  |
|       | 신 촌 리   | 신촌리 일원  |
|       | 신 복 리   | 신복리 일원  |
|       | 온 정 리   | 온정리 일원  |
|       | 석 계 리   | 석계리 일원  |
|       | 구 월 리   | 구월리 일원  |
|       | 용 치 리   | 용치리 일원  |
|       | 송 지 리   | 송지리 일원  |
|       | 금 문 리   | 금문리 일원  |
|       | 주 문 리   | 주문리 일원  |
|       | 덕 곡 리   | 덕곡리 일원  |
| 축 동 면 | 길 평 리   | 길평리 일원  |
|       | 배 춘 리   | 배춘리 일원  |
|       | 사 다 리   | 사다리 일원  |
|       | 탑 리     | 탑 리 일원  |
|       | 반 용 리   | 반용리 일원  |
|       | 가 산 리   | 가산리 일원  |
|       | 구 호 리   | 구호리 일원  |
| 곤 양 면 | 성 내 리   | 성내리 일원  |
|       | 남 문 외 리 | 남문외리 일원 |
|       | 서 정 리   | 서정리 일원  |
|       | 무 고 리   | 무고리 일원  |
|       | 맥 사 리   | 맥사리 일원  |
|       | 송 전 리   | 송전리 일원  |
|       | 대 진 리   | 대진리 일원  |
|       | 환 덕 리   | 환덕리 일원  |
|       | 묵 곡 리   | 묵곡리 일원  |
|       | 홍 사 리   | 홍사리 일원  |
|       | 가 화 리   | 가화리 일원  |

| 읍면동명칭 | 리동명칭   | 관 할 구 역 |
|-------|--------|---------|
|       | 검 정 리  | 검정리 일원  |
|       | 중 향 리  | 중향리 일원  |
| 곤 명 면 | 주 천 리  | 주천리 일원  |
|       | 용 산 리  | 용산리 일원  |
|       | 조 장 리  | 조장리 일원  |
|       | 봉 계 리  | 봉계리 일원  |
|       | 초 량 리  | 초량리 일원  |
|       | 삼 정 리  | 삼정리 일원  |
|       | 은 사 리  | 은사리 일원  |
|       | 마 곡 리  | 마곡리 일원  |
|       | 송 립 리  | 송림리 일원  |
|       | 성 방 리  | 성방리 일원  |
|       | 작 팔 리  | 작팔리 일원  |
|       | 신 흥 리  | 신흥리 일원  |
|       | 정 곡 리  | 정곡리 일원  |
|       | 본 촌 리  | 본촌리 일원  |
|       | 금 성 리  | 금성리 일원  |
| 연 평 리 | 연평리 일원 |         |
| 서 포 면 | 금 진 리  | 금진리 일원  |
|       | 내 구 리  | 내구리 일원  |
|       | 외 구 리  | 외구리 일원  |
|       | 조 도 리  | 조도리 일원  |
|       | 구 량 리  | 구량리 일원  |
|       | 자 혜 리  | 자혜리 일원  |
|       | 구 평 리  | 구평리 일원  |
|       | 선 전 리  | 선전리 일원  |
|       | 비 토 리  | 비토리 일원  |

| 읍면동명칭   | 리동명칭  | 관 할 구 역  |
|---------|-------|--|
|         | 다 평 리 | 다평리 일원   |
| 동 서 동   |       |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
| 선 구 동   |       |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br>· 선구동에서 서금동으로 편입된 지번(41-38, 41-232) 제외   |
| 동 서 금 동 |       | 동금동, 서금동 일원<br>· 동금동에서 선구동으로 편입된 지번(441, 441-20, 441-2, 441-3, 441-16, 441-17, 441-19, 441-23, 441-24, 441-25, 441-27, 441-28, 441-29, 441-30, 441-31, 441-32, 441-33, 441-34) 제외<br>· 서금동에서 선구동으로 편입된 지번(5, 6, 43, 44-1, 44-2, 44-3, 44-4, 45-2, 46-1, 46-2, 46-4, 46-3, 46-5, 47, 48, 74-3, 75-2, 75-6, 76, 77, 79, 128-35, 81, 93, 98-1, 94-1, 95, 97, 98-3, 99-7, 128-38, 128-40) 제외<br>· 서금동에서 동금동으로 편입된 지번(1, 2, 3, 4-2, 4-3, 4-1, 5-2, 5-1, 6-2, 6-1, 10, 8-1, 43-1, 42-1, 10-1, 9-4, 11, 128-30, 12-1, 13, 12-4, 12-5, 128-1, 15, 17, 23-1, 22-1, 19, 18, 20-1) 제외 |
| 별 용 동   |       | 별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
| 향 촌 동   |       | 봉남동, 이금동, 이흥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
| 남 양 동   |       |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br>· 송포동에서 죽림동으로 편입된 지번(279-1, 279-10, 279-15, 280-1, 280-5, 354-10, 1498-43, 279-7, 257-12, 279-9, 279-14, 279-5, 279-12, 279-6, 279-13, 279-4, 279-11, 278-9, 278-8, 278-1, 278-6, 278-7, 259-2, 259-13, 258-1, 258-12, 258-8, 258-9, 258-17, 258-4, 258-5, 256-1, 256-10, 256-6, 257-1, 256-12, 257-7, 1509-6, 257-6, 257-10, 1509-52) 제외   |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조례 제18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일

##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보호·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관 협력 및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관련 서비스

## 제3장 지역돌봄협의체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및 시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
2. 온종일 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온종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제13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4장 다함께돌봄센터

제1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 종류나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②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보험)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조례 제182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조례 제182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며,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3조(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이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조정된 사항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중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5.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신설 2022.3.3.>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보상등급                    |     | 보상금 결정 기준           | 비고  |
|-------------------------|-----|---------------------|---|
| 요양보상                    |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   |
| 장해보상                    |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   |
| 유족보상                    |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
| 신체 등<br>급별 장<br>해<br>보상 |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br>등급에 관하여는<br>「의사상자 등<br>예우 및 지원에<br>관한 법률 시행<br>령」 별표 1을 따<br>른다. |
|                         | 제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   |
|                         | 제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   |
|                         | 제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   |
|                         | 제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
|                         | 제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
|                         | 제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
|                         | 제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
|                         | 제9급 | 유족보상금의 5/100        |   |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 ○ ○

## 가입신청서<개인>

---

---

등록번호 : \_\_\_\_\_

|   |  |                  |  |      |  |
|---|--|------------------|--|------|--|
| 성 명                                       | ○○○(성별)  | 연 령              |  | 혈액형  |  |
| 주 소                                       |  |                  |  | 일반전화 |  |
|   |  |                  |  | 휴대전화 |  |
| 자 격 증<br>또는 기능                            |  | 운전가능여부<br>(면허종류) |  |      |  |
| 재 난<br>현장경험                               |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br>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                  |  |      |  |
| 희 망<br>활동내용                               |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                  |  |      |  |
| [특이사항]                                    |  |                  |  |      |  |
|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  |                  |  |      |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사천시장 귀하

##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                              |   |                |                |                |
|------------------------------|---|----------------|----------------|----------------|
| 단 체 명                        |   | 대 표 자          | ○○○<br>(휴대전화)  |                |
| 주 소                          |   |                | 대표전화           |                |
| 담 당 자                        | ○○○<br>(휴대전화)   | 부서명            |                |                |
| 인 원                          | 남 ○○명   | 여 ○○명          | 총인원            | ○○명            |
| 장 비                          | 장비명(규격)<br>○○대  | 장비명(규격)<br>○○대 | 장비명(규격)<br>○○대 | 장비명(규격)<br>○○대 |
| 지원가능                         | 남 ○○명   | 장비(규격)<br>○○대  | 장비(규격)<br>○○대  | 장비(규격)<br>○○대  |
|                              | 여 ○○명   |                |                |                |
| 전문분야                         | ※ 단체의 성격 정리<br>(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                |                |                |
| 활동희망분야                       |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                |                |                |
| [첨부서류]<br><br>(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   |                |                |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사천시장 귀하





## 활동확인서

| 성명                                   | (인) | 등록번호  | ※ 서식2의 등록번호 |
|--------------------------------------|-----|---|-------------|
| 활동내용                                 | 사유  |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             |
|                                      | 방법  |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             |
|                                      | 시간  | ○○○○년○○월○○일 부터<br>~ ○○○○년○○월○○일 까지 (○○시간)                                       |             |
|                                      | 장소  |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
|                                      | 내용  |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br>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br>○○마을 차량통제, 00시간<br>○○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             |
| [건의사항]<br>※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     |   |             |
| 확인자                                  | 직위  | ○○읍(면동)대표   | 성명 (인)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br>번호 | 성 명 | 활 동 상 황 |     | 비 고 |
|----------|-----|---------|-----|-----|
|          |     | 횃 수     | 시 간 |     |
| 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등록번호란 별지 제2호,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붙임]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2.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3.3.>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 월별 | 주요내용   | 비고 |
|----|--------|----|
| 1  | ○<br>○ |    |
| 2  | ○<br>○ |    |
| 3  | ○<br>○ |    |
| 4  | ○<br>○ |    |
| 5  | ○<br>○ |    |
| 6  | ○<br>○ |    |
| 7  | ○<br>○ |    |
| 8  | ○<br>○ |    |
| 9  | ○<br>○ |    |
| 10 | ○<br>○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3.3.>

## 출 입 증

| 출 입 증          |  |
|----------------|--|
| 사 진<br>(3×4cm) |  |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  |

← 5.5cm →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  |
|--|--|
| NO. 000      혈액형 O(RHO)형                       |  |
| 성 명 : ○ ○ ○                                    |  |
| 생년월일 : . . ( )                                 |  |
| 소 속 :  |  |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년 월 일  |  |
| 사 천 시 장 (인)                                    |  |

바탕 배경에 시 상징(회장) 삽입

↑  
7.7cm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3.3.>

## 요양 [ ], 장해 [ ], 장제 [ ], 유족 [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              | 주소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청구인          | 주소  | 전화번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사고자와관계  |                 |
| 사고경위<br>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
|              | 사고(사망)장소  |                 |
|              | 사고경위<br>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                 |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              | 청구금액  |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
| <p>제출서류</p>           | <p>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br/>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br/>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br/> ② 장해증명서류 1부.<br/>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br/>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br/>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br/>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br/> ⑦ 통장사본 1부.<br/>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p> | <p>수수료<br/>없음</p> |
| <p>담당공무원<br/>확인사항</p> | <p>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br/>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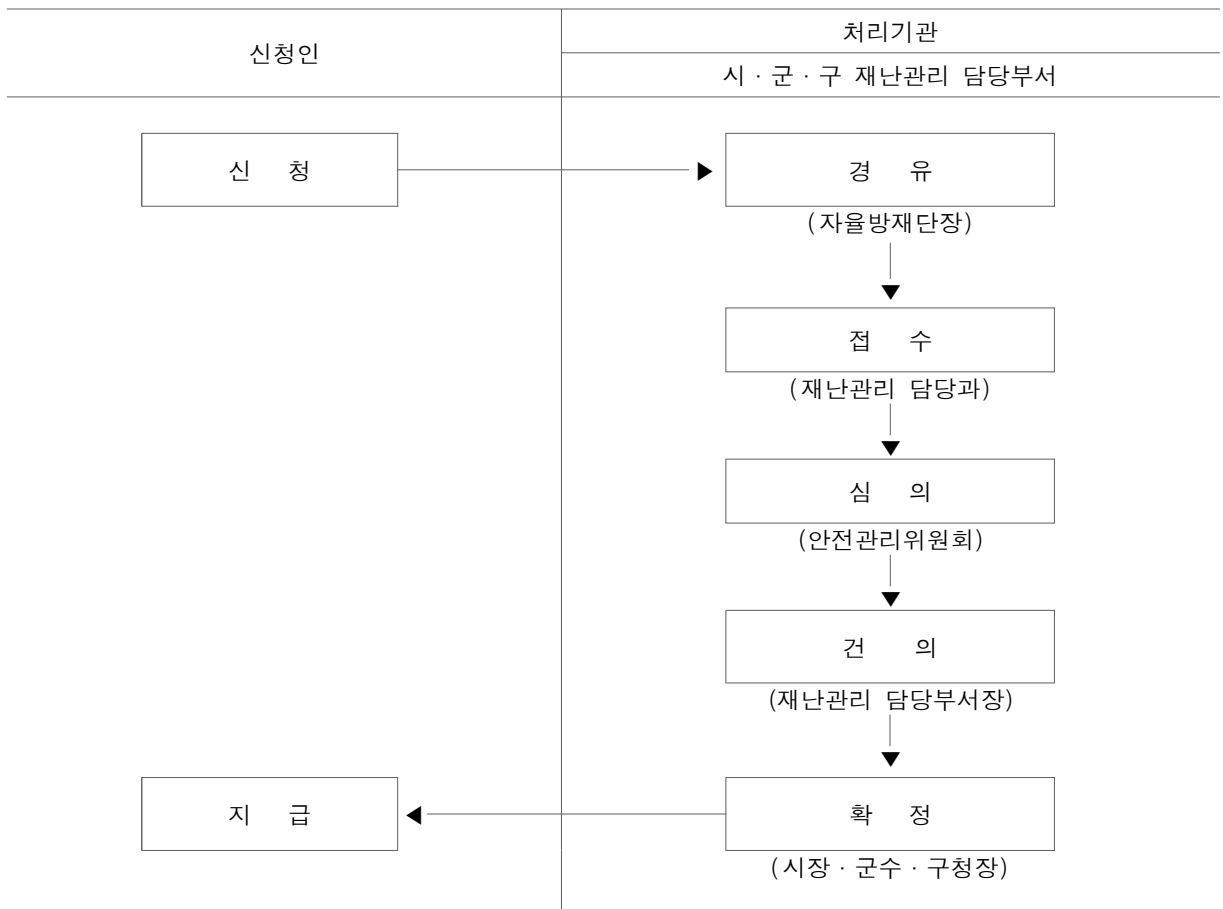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조례 제18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일

##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에 기부채납”을 “사천시에 기부채납”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성명 (또는 대표자) (인)”을 “성명 (또는 대표자) (남/여)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3.3.>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
| 대 강 당               | ○ 1일 1회:<br>30,000원 | ○ 1회: 2시간 이내<br>(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br>○ 평일 18:00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br>20% 가산<br>○ 동·하절기 냉·난방비: 1시간당 10,000원 |
| 소회의실                | ○ 1일 1회:<br>20,000원 |   |
| 그 밖의 교육장<br>(직업교육장) | ○ 1일 1회:<br>20,000원 | ○ 1회: 2시간 이내<br>(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br>○ 평일 18:00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br>20% 가산<br>○ 동·하절기 냉·난방비: 1시간당 10,000원 |
| 족구장<br>(배구장·농구장)    | ○ 조명사용료:<br>10,000원 | ○ 1회: 2시간   |
| 헬스장                 | ○ 월 사용료:<br>35,000원 | ○ 1개월: 35,000원  |
| 당구장                 | ○ 1회: 3,000원        | ○ 1회: 30분<br>(10분 초과 시 마다 1,000원 가산)  |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조례 제182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법 제2조제1호의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을 두고 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입학축하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에 초등학교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입학축하금의 지급) 시장은 입학축하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규칙 제79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규칙 제79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천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업무 추진 및 행정정보 공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원부서”란 제3호의 주관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 및 협조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제3조(처리부서 지정) ①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부서일 경우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② 청구내용이 4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8조(심의 요청)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사천시정보공개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른 사천시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   |   |   |   | 서기 | 간사 | 위원장 | 결<br>재 |  |
|---|---|---|---|----|----|-----|--------|--|
|   |   |   |   |    |    |     |        |  |
| 일   | 시 |   |   |    | 장  | 소   |        |  |
| 참석상황  | 정 | 원 | 참 | 석  | 불  | 참   | (불참위원) |  |
|   |   |   |   |    |    |     |        |  |
| <p>○ 안    건</p><br><br><p>○ 심의사항</p><br><br><p>○ 심의결과</p>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3.3.>

##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심의요청서

수신 : 정보공개 총괄부서장

발신 : 처리부서의 장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
| 1. 정보공개청구인<br>(이의신청인) | 성 명<br>(법인명 및 대표자) |  |
|                       | 주 소<br>(소재지)       |  |
| 2. 공개청구내용<br>(이의신청내용) |                    |  |
| 3. 공개 또는 비공개<br>결정내용  |                    |  |
| 4. 이의신청의 취지 및<br>사유   |                    |  |
| 5. 그 밖의 사항            |                    |  |

-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처리부서 검토의견서 1부.  
4. 그 밖의 증명자료 각 1부.

##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안건   |     |     |   |     |
|--|-----|-----|---|-----|
| 심의결과   |     |     |   |     |
| 사 유  |     |     |   |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br><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     |     |   |     |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의 건 |
|  |     | 가   | 부 |     |
| 위원장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3.3.>

###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

| 접 수 |    | 심 의<br>안 건 | 심 의<br>방 법 | 처 리<br>부 서 | 심 의 |     | 비 고 |
|-----|----|------------|------------|------------|-----|-----|-----|
| 월 일 | 번호 |            |            |            | 월 일 | 결 과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사천시 공고 제2022 - 295호

## 엘크루 주변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부 중로3-9, 3-4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사천시 고시 제2013-71호(2013.5.9.)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부 중로3-9, 3-44호선)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 사 천 시 장

### 1.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258-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 천 시 공 보

제768호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부 중로3-9, 3-44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엘크루 주변 도시계획도로(중로3-9, 3-44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중로3-9호선) L=104m, B=12.0m

○ 도로개설(중로3-44호선) L=182m, B=12.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사천시장(도시과장)

2)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장 소: 사천시청 도시과

다.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 입 토 지 조 서

| 연<br>번 | 위 치 |    |        | 지<br>목 | 면 적(㎡)  |         | 소 유 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권리의<br>종류<br>및내용 | 비<br>고 |
|--------|-----|----|--------|--------|---------|---------|-------------|---------------------------|--------------|-----|------------------|--------|
|        | 면   | 리  | 지번     |        | 대장      | 편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        |
| 1      | 사남  | 월성 | 555-2  | 도      | 179.4   | 179.4   | 경상남도        |                           |              |     |                  |        |
| 2      | 사남  | 월성 | 553-1  | 도      | 128.4   | 128.4   | 사천시         |                           |              |     |                  |        |
| 3      | 사남  | 월성 | 261-6  | 전      | 314     | 314     | 사천시         |                           |              |     |                  |        |
| 4      | 사남  | 월성 | 261-8  | 전      | 13      | 13      | 사천시         |                           |              |     |                  |        |
| 5      | 사남  | 월성 | 260-3  | 전      | 33      | 33      | 사천시         |                           |              |     |                  |        |
| 6      | 사남  | 월성 | 산28-44 | 임      | 476     | 476     | 사천시         |                           |              |     |                  |        |
| 7      | 사남  | 월성 | 258-1  | 전      | 284     | 284     | 김*호         | 진주시<br>초장로14번길 29,<br>*   |              |     |                  |        |
| 8      | 사남  | 월성 | 254-6  | 전      | 372     | 372     | 정*영         | 진주시 신안들말길 17,<br>*        |              |     |                  |        |
| 9      | 사남  | 월성 | 255-3  | 묘      | 346     | 346     | 사천시         |                           |              |     |                  |        |
| 10     | 사남  | 월성 | 254-8  | 전      | 121     | 121     | 사천시         |                           |              |     |                  |        |
| 11     | 사남  | 월성 | 541-65 | 도      | 560     | 59      | 국토교통<br>부   |                           |              |     |                  |        |
| 12     | 사남  | 월성 | 251-1  | 답      | 946     | 884     | 신*영         | 사천시 사남면<br>월성리 *          |              |     |                  |        |
| 13     | 사남  | 월성 | 249-5  | 답      | 89      | 32      | 사천시         |                           |              |     |                  |        |
| 14     | 사남  | 월성 | 250-1  | 답      | 2       | 2       | 신*철         | 진주시<br>진주성로147번길 10,<br>* |              |     |                  |        |
| 15     | 사남  | 월성 | 산28-27 | 임      | 5       | 5       | 대*<br>종합건설  | 창원시 상남동 *                 | 사천시<br>경상남도  |     | 압류               |        |
| 16     | 사남  | 월성 | 산28-23 | 도      | 902     | 158     | 사천시         |                           |              |     |                  |        |
| 17     | 사남  | 월성 | 482-1  | 도      | 331     | 40      | 사천시         |                           |              |     |                  |        |
| 18     | 사남  | 월성 | 482-2  | 구      | 628     | 2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 합 계    |     |    |        |        | 5,729.8 | 3,448.8 |             |                           |              |     |                  |        |

## 편 입 물 건 조 서

| 연<br>번 | 소재지        | 지 번    | 물건의<br>종 류                                       | 구조<br>및<br>규격                             | 면적<br>및<br>수량                           | 단위                                    | 소 유 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권리의<br>종류<br>및<br>내용 | 비<br>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1      | 사남면<br>월성리 | 산28-44 | 감나무<br><br>사철나무<br><br>나무                        | 30년<br>생                                  | 1<br><br>35<br><br>5                    | 주<br><br>주<br><br>주                   | 이*국 외<br>1인 | 사천시 사천읍<br>옥돌길 *        |              |    |                      |        |
| 2      | 사남면<br>월성리 | 258-1  | 감나무  | 20년<br>생                                  | 19                                      | 주                                     | 김*호         | 진주시<br>초장로14번길<br>29, * |              |    |                      |        |
| 3      | 사남면<br>월성리 | 254-6  | 감나무<br><br>뽕나무<br><br>매화나무<br><br>금목서<br><br>산수유 | 20년<br>생<br>10년<br>생<br>5년생<br>5년생<br>5년생 | 1<br><br>5<br><br>22<br><br>82<br><br>2 | 주<br><br>주<br><br>주<br><br>주<br><br>주 | 정*영         | 진주시 신안들말길<br>17,*       |              |    |                      |        |

##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서

|           |                                   |      |
|-----------|-----------------------------------|------|
| 사 업 명     | 엘크루 주변 도시계획도로(중로3-9, 3-44호선) 개설공사 |      |
| 사업장 위치    |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258-1번지 일원            |      |
| 의견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업에 관한 의견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 내용에 관한 의견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